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1183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문애림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D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 제530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1,257,130원을
198,901,3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644,172원을 0원으로 경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등 소{1심 :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519(본소) 및 2015드합39852(반소), 선고 2016. 12. 21., 2심 : 서울고등법원 2017르20326(본소) 및 2017르20333(반소), 선고 2019. 1. 21., 3심 : 대법원 2019므10963(본소) 및 2019므10970(반소), 결정일 2019. 6. 13.}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재산분할로 1억 6,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원고의 어머니인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240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11. 'F은 C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을 받았다(이하 C의 F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F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8. 6. 26. 확정되었다.

다. C은 2017. 4. 19.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터잡아 F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강제경매사건을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5. 17. 서울고등법원 2018즈합2005호로 청구채권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채권, 위자료채권 및 양육비채권 중 3억 원으로 하여 C의 F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C은 2018. 10. 31. 피고에게, D공증인합동사무서 증서 2018년 제530호로 '피고가 2018. 10. 31. 7,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고, C은 이를 2018. 11. 5. 일시불로 변제하며,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하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8. 11. 8. 집행권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 청구금액을 원금 7,000만 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0905호로 C이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 있어 경매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5.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3채무자로서 송달받아 이를 2018. 11. 20.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에 송부(이하 송부한 서류를 ‘이 사건 송부서’라 한다)하였다.

사.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은 2018. 12. 5. 매각되었고, 이에 집행법원은 2019. 1. 22. 매각대금을 배당하였는데,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서울고등법원 2018즈합2005호 등)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0905호)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261호로 공탁하였다.

아.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9. 6. 18.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공탁금 198,945,185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8,901,302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161,257,130원, 피고에게 37,644,1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피고와 C을 상대로 2019.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3128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9. 1. 9.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를 집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내지 16, 24호증 및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정증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청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원인이 되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취소를 구한다.1)

나.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존재를 늦어도 2019. 1. 18.경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5.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피고가 제시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8. 11. 20.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에 송부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19. 1. 22.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 등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하였다.

○ 피고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2020. 1. 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9. 1. 18. 소외 주식회사 H 대표자 I를 만나 I로부터 피고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위에서 거시한 인정근거 및 갑 제6호증, 제25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고, 이어 2019. 1. 18. I로부터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를 진행하면서 C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됨으로써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취소소송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5. 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C와 사이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의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8. 11. 20.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송부되었다. 이에 위 집행법원은 2019. 1. 22.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 등과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하였다.

○ 원고는 2019. 1. 9.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는데, 그 가처분신청서에는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이 사건 가등기가 경로된 부동산이 있는데, C은 ① 피고로 하여금 청구금액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채권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② 이어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처분하였고, ③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로해 줌으로써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위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위 가처분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첨부된 이 사건 송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란에는 ‘7,000만 원(원금)’, 이유란에는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D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 제53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9. 1. 18. 주식회사 H의 대표자 I를 만나 I로부터, ‘피고 측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서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당시 원고와 I는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2019. 1. 22. 있을 배당에 관하여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원인채권 부존재 또는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형성소송으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즉, 원인채권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행위 취소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취소소송 중 원인채권 부존재 또는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공정증서 작성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배당표 경정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판단

1)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인데(2020.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중 제3항 소결 부분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2)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한 배당이의

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경정을 구하는 배당표에 관한 배당기일인 2019. 6. 18.로부터 1주가 경과한 2020. 6.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위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9.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33128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부가적 판단

설령 이 부분 청구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표 경정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혜

1)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행위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하여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